

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- 26호

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길호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3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8월 27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길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	
번 호	

발의연월일 : 2021. 8. .

발 의 자 : 이길호, 성복임, 장경민,
이전행, 홍경호, 신금자,
이희재, 김귀근, 이우천

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임

2. 주요내용

- 현행 조례 제40조제1항에 6호 신설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

3. 관련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 (생략)	제40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 (현행과 같음)
1.~5. (생략)	1.~5. (현행과 같음)
6. <신설>	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